

# 「신용카드 법인회원약관」 개정 안내

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.

신용카드 법인회원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. 시행일자 : 2021년 9월 25일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b>제 23조 (포인트 및 기타서비스)</b>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 (단,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</p> <p>1.카드사 또는 제휴업체의 휴업·파산·경영상의 위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</p> <p><b>&lt;신 설&gt;</b></p> <p>2 ~ 3. (생략)</p> <p>④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,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,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, 전화,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,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,우편 또는 팩스에 의한 서신전달, 전화,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,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.</p> <p>1. 제③항 제1호, 제2호 : 사유발생 즉시</p> <p>2. (생략)</p> <p>⑤ ~ ⑧ (생략)</p>	<p><b>제 23조 (포인트 및 기타서비스)</b>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 (단,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</p> <p>1.<u>카드사의</u> 휴업·파산·경영상의 위기 <u>등에 따른 불가피한</u> 경우</p> <p><u>1의2. 제휴업체의 휴업·파산·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·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</u></p> <p>2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,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<u>서면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우편, 전화 또는 팩스,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</u>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6개월 이전부터는 <u>서면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우편, 전화 또는 팩스,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</u>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.</p> <p>1. 제③항 제1호, <u>제1호의 2</u>, 제2호 : 사유발생 즉시</p> <p>2. (생략)</p> <p>⑤ ~ ⑧ (현행과 같음)</p>	<p>금소법 제20조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관련 문구 정비/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감독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통지 방법 문구 정비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제 23조의 2 (카드 이용내역 표시)</u>  <u>카드사는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</u>  <u>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하위 사업자의</u>  <u>상호를 표시하여 드립니다. 단, 결제대행업체의 전산개발 지연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할 경우,</u>  <u>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시하여 드립니다.</u></p>	<p>권익위·금융위의 카드 결제 내역 표시방식 개선 제안 사항 반영</p>
<p><b>제29조 (청약의 철회)</b>  회원은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, 제 46조 및 관련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30조 (위법계약의 해지)</b>  (생략)</p> <p><b>제31조 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</b>  (생략)</p> <p><b>제32조 (약관 위반시의 책임)</b>  (생략)</p> <p><b>제33조 (관할법원)</b>  (생략)</p> <p><b>부칙</b> 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제13조 제1항 및 제13제 1항의 4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, 23조 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캐시백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.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b>제29조 (위법계약의 해지)</b> 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30조 (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</b> 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31조 (약관 위반시의 책임)</b> 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32조 (관할법원)</b> 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부칙</b>  이 약관은 2021년 <b>9월 25일</b>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제13조 제1항 및 제13제 1항의 4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, 23조 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 및 캐시백 적립분부터 적용합니다.</p>	<p>금소법 제46조 (청약의 철회)의 대상 상품에서 신용카드 제외 반영/조번호 올림</p>

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.

신용카드 법인회원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. 시행일자 : 2021년 9월 25일